

2026.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 월 한도액 (공통)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 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 가능
-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 (2021년 변경)
-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
- * 월 이용 한도액 (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 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

*** 2026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30분	17,450원	2,618원	1,570원	1,525원
60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34,120원	5,118원	3,070원	2,047원
120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심야가산 :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

등급	월한도액	1일가능시간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	2,512,900원	최대 4시간 (240분) 68,030원	31일
2등급	2,331,200원		31일
3등급	1,528,200원	최대 3시간 (180분) 61,670원	27일
4등급	1,409,700원		25일
5등급	1,208,900원	최소2시간 ~최대3시간	21일
인지지원 등급	676,320원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1·2등급 -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 3·4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2026년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원	6,432원	3,859원	2,573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원	8,066원	4,839원	3,226원
60분 이상	64,690원	9,704원	5,822원	3,881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2026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8,990원	13,349원	8,009원	5,339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80,230원	12,035원	7,220원	4,814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7,515원	4,509원	3,006원

-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
우에 산정하고,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